

고등직업교육거점센터 운영규정

제정 2022.07.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센터(이하 'HiVE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HiVE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수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 실적 및 성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1. HiVE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한다.
2. HiVE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과 팀장, 팀원 그리고 사업 추진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 (HiVE센터장)

HiVE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와 평가 및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운영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3. 추가 신설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사업') 관련 법률, 법령, 규칙, 훈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0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